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실내 오락시설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임시 지침

이 문서를 읽고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기준

목적

본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실내 오락시설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Indoor Amusement and Family Entertainment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혹은 "실내 오락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임시 지침"(Interim COVID-19 Guidance for Indoor Amusement)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를 실내 오락시설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소유자/운영자, 그 직원, 계약자, 벤더,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모든 실내 오락시설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 활동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기술과 우연의 아케이드 및 리DEM션 게임(redemption game), 에어 하키, 핑퐁, 스키볼(Skee-Ball), 장애물 또는 레크리에이션 코스, 레이저 태그, 소프트 플레이 구역, 이스케이프 룸, 가상 현실 어트랙션, 실내 트램폴린 공원, 실내 회전목마, 실내 기차 타기, 실내 롤러코스터 및/또는 실내 범퍼카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내 오락시설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는 본 지침에 따라 **2021년 3월 26일** **금요일**부터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Responsible Parties)(아래에 정의됨)는 재개장 **2주** 이내에 해당 카운티 보건부 또는 현지 공중 보건당국에 재개장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본 지침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는 특정 보건 프로토콜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2021년 4월 9일 **금요일**까지 재개장할 수 없는 야외 놀이공원, 테마 파크 또는 워터 파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에서 발행하는 향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본 문서에 명시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청소 및 소독 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실내 오락 어트랙션 또는 활동(예: 볼피트)은 폐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 오락시설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에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내 오락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소유자/운영자는 해당하는 경우 관련 산업별 보건부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특히, 소매점 혹은 기념품점은 보건부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필수 및 2단계 소매 사업체 활동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Essential and Phase II Retail Business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사무실 기반 활동은 보건부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사무실 기반 업무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Office-Based Work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레스토랑, 바 및/또는 매점은 보건부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식품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하지만, 본 지침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암벽 등반, 미니 골프, 배팅 케이지 및/또는 볼링과 같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보건부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Sports and Recreation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하여야 합니다. 수영장 및 레크리에이션 물 스프레이그라운드(aquatic spray ground)는 보건부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수영장 및 레크리에이션 물 스프레이그라운드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ools and Recreational Aquatic Spray Ground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단, 본

지침이 안전 가리개를 요구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보건 및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물속에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그러한 가리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영화관은 보건부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영화관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Movie Theater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및 공연은 해당하는 경우 보건부의 향후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소 규모의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Small and Medium-Scale Performing Arts and Entertainment Venu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또는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대규모 공연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대한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Large-Scale Performing Arts and Entertainment Venue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에 설명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침은 최소 요구사항일 뿐이며, 모든 실내 오락 시설 또는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소유자/운영자는 추가적인 예방 조치나 제한 사항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발표 당시의 최선으로 알려진 공중 보건 관행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지침의 기반이 되는 문서는 자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변경됩니다.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은 책임 당사자는 실내 오락과 가족 엔터테인먼트 활동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지역, 주 및 연방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갱신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거나 모든 실내 오락 활동 및/또는 현장 안전 계획(Site Safety Plan)에 이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배경

2020년 3월 7일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주정부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공표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이후 뉴욕주는 과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계적 경제 재개 전략을 개발 및 배포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공중 보건을 보호하면서 활동과 운영을 안전하게 재개하거나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의 기준과 더불어 사업체는 반드시 보건부가 발행한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이 뉴욕주에서 발행한 기타 지침 문서와 다른 경우에는 최신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뉴욕주 내 책임감 있는 실내 오락 시설 운영에 대한 기준

다음의 최소한의 주정부 기준 및 적용 가능한 연방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실내 오락 시설 또는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활동 또는 운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미국 노동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의 직업 안전 및 보건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최소 기준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지침에 포함된 주정부 기준은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철회 또는 개정하기 전까지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운영하는 모든 실내 오락 시설 및 엔터테인먼트 센터에 적용됩니다. 실내 오락시설 또는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의 소유자/운영자 또는 소유자/운영자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당사자(두 경우 모두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의 지침은 사람, 장소, 절차의 세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I. 사람

A. 물리적 거리두기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이 반드시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만 시설 입장을 허용하고 현존하는 직원 및 고객을 모두 포함하여 점유 허가에 의해 설정된 특정 장소의 최대 점유 인원 또는 수용 인원의 **25%**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단, 만 2세 이상이며 이러한 가리개 착용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적인 행사(예: 생일 파티, 기업 행사)가 다음 중 적은 인원으로 제한되는지 확인해야 함: 특정 지역에 대해 점유 허가로 설정된 최대 점유 인원의 **25%** 또는 주의 현재 실내 사회적 모임 한계인 **100명** 이하, **2021년 3월 22일** 자.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동일한 단체/가구/가족일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직원, 고객 등 모든 사람이 항상(예: 줄에 서서 대기하는 중, 게임 플레이 중) 서로 최소 **6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단, 수행하는 안전 또는 핵심 활동에 더욱 짧은 거리가 필요한 경우(예: 금전출납기 사용, 기기 운반)는 제외합니다.
 - 직원과 고객 간의 상호 작용이 자주 발생하고 직원과 고객 간에 **6피트**의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책임 당사자가 직원과 고객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세워야 합니다(예: 금전 등록기, 티켓 키오스크, 매점, 검표 스테이션). 또한 줄을 설 수 있는 고객을 위해 최소 **6피트**의 거리를 표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어트랙션의 수용 인원을 줄이고/줄이거나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여 동일한 단체/가구/가족이 아닌 개인이 서로 최소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동일한 단체/가구/가족의 구성원이거나 적절한 물리적 장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명이 이용하는 어트랙션, 게임 및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가 적절한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해 어트랙션, 게임 및 활동을 재배열할 수 없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인접한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을 폐쇄 또는 종료하거나 이러한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 사이에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 플레이 중에 고객이 앉지 않는 어트랙션, 게임 및 활동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트랙션이나 게임 바깥 주변에 **6피트** 간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플레이하지 않으며 어트랙션이나 게임을 관전하기 위해 모인 고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거나 물리적 장벽을 설치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그룹을 나누기 위해 적절한 물리적 장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특정 수의 개인이 참여해야 할 수 있는 그룹 활동을 목적으로 다른 단체/가구/가족의 개인을 결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항상 허용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이들이 만 2세 이상이며 그러한 가리개 사용이 의학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단, 고객이 지정된 구역에 앉아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일시적으로 안면 가리개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안면 가리개는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티켓 픽업 대기 중, 공용 구역을 탐색할 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모든 시간에 착용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안면 가리개를 벗어야 하는 일체의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에는 입과 코를 모두 덮는 천 소재 안면 가리개, 일회용 마스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천 소재, 일회용, 기타 직접 만든 안면 가리개는 작업 특성상 일반적으로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작업장 활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정의된 대로 기존 산업 기준 하에서 사용되는 **N95** 마스크 또는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 요건은 해당되는 경우 연방 장애인법 및 뉴욕주 및 시 인권법(City Human Rights Laws)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들이 동일한 단체/가구/가족의 일원이 아닌 한 개인이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고 자주 청소 및 소독하지 않고(예: 사용 사이) 워크스테이션,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을 공유하지 않도록 워크스테이션, 직원 및/또는 고객 좌석 공간,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의 사용을 수정하거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을 옮기거나 필요한 경우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 운영을 중단하여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 간에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기 흐름, 난방, 냉각 또는 환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건강 또는 안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지역에 물리적 장벽(예: 플라스틱 차폐벽)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 장벽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에 따라 물리적 장벽을 배치해야 합니다.
 - 물리적 장벽 옵션에는 스트립 커튼, 큐비클,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또는 기타 불침투성 칸막이나 파티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동일한 단체/가주/가정 소속이 아닌 개인이 모든 방향(예: 좌우 및 서로 마주할 때)에서 최소 6피트 떨어져 있거나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도록 공용 좌석 공간의 좌석 공간 배치(예: 의자, 테이블)를 수정해야 합니다.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물리적 장벽을 설치할 수 없는 공용 좌석 공간은 반드시 폐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개인이 작은 공간(예: 금전 등록기 뒤편, 기기 점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단,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직원이 동시에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거나 동일한 단체/가구/가정 구성원일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 명이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는 한 점유 공간이 공간 최대 수용 인원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 당사자는 안전 프로토콜을 유지하면서 실외 공기를 최대한 환기 (예: 창문을 열고, 문을 열어 둔 상태)하여 환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가 존재할 경우, 책임 당사자는 엘리베이터 대기 구역에서의 모임을 방지하고 엘리베이터의 밀집도를 제한하기 위해 계단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오락시설 또는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 전체에 보건부 코로나19 표지판과 일치하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해당 표지판이 부서의 표지판과 일치하는 경우 직장 또는 환경에 따라 고유한 맞춤형 표지판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은 사람들이 다음 사항을 기억하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 아프다면 집에 머무르도록 알립니다.
 - 앉아 있거나 먹거나 마시는 동안을 제외하고 항상 안면 가리개로 코와 입을 덮어야 합니다.
 - 보건부 여행 경보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제대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이 코로나19에 대한 증상이나 노출을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알립니다.
 - 손 위생과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적절한 호흡기 위생과 기침 에티켓을 따라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사용 후 라벨 지침에 따라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사용하십시오. 단, 개인이 성인 직원 또는 고객이며 그러한 용품을 사용할 경우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B.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임

-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2019(코로나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체 및 운영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Businesses and Employers to Plan and Respon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에 따라 최대한 대면 모임(예: 직원회의, 휴게실, 창고 등)을 제한하고 가능할 경우마다 동영상 또는 화상회의 등 기타 회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영상 회의 또는 화상 회의가 선호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개방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회의를 열어야 하며 개인이 서로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의자 사이 간격을 띄우고 한 의자씩 거르고 앉기).
- 책임 당사자는 점유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 및 공용 구역을 폐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해야 합니다. 개방할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편의 시설(예: 자동판매기, 공용 커피머신) 근처에 있는 손 소독제 또는 소독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이나 휴게실과 같은 좁은 지역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한 관행을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점유 인원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판과 시스템(예: 사용 시 표시)을 개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동욕실에 대한 모범 관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6피트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변기 및 개수대, 비누/페이퍼 타올 디스펜서 사이에 물리적 장벽 설치(예: 하나씩 띄워서 화장실 또는 개수대 폐쇄).
 - 비접촉식 비누 디스펜서 사용
 - 공기 건조 장치 대신 비접촉식 종이 타월 디스펜서 사용, 및
 - 화장실의 수용 인원 제한과 대기 중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한 적절한 표지판 설치.
- 책임 당사자는 실행 가능한 한 모든 직원 모임(예: 쉬는 시간, 식사 및 근무 시작/중지) 시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즉, 6피트 공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정에 시차를 두어야 합니다.

C. 운영 활동

- 재개장 2주 내에, 책임 당사자는 본 지침에 설정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특정 보건 절차(예: 건강 검진, 사회적 거리두기, 안면 가리개, 이동 통제, 손 위생, 청소 및 소독, 커뮤니케이션)를 포함한 계획을 각 카운티 보건부 또는 지역 공중 보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계획을 접수한 후, 지역 보건 공무원은 본 지침 요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하거나 현장 또는 원격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제공되는 모든 부지 내 음식 서비스에 대해 보건부의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식품 서비스에 대한 임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좌석이 있는 테이블 간에 필요한 분리 및 단체 또는 고객 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 지침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앉아 있는 동안에만 음식과 음료를 섭취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셀프 서비스 식음료(예: 조미료, 소다)를 중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음식과 음료가 사전 포장으로 또는 미리 채워진 용기에 담아 제공되고 동일한 단체/가구/가족이 아닌 개인 간에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식음료 서비스에 대한 적용 가능한 모든 통제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자로, 해당 식음료 서비스는 오후 1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본 지침에 명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장벽 및/또는 청소 및 소독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모든 실내 오락시설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 또는 참여를 위해 고객이 안전 가리개를 벗어야 할 수 있는 모든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을 폐쇄해야 합니다(예: 볼피트/폴).
- 책임 당사자는 각 개별 어트랙션, 게임 및 활동을 평가하여 고객이 안전 가리개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안전 가리개가 느슨한 물품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게임, 어트랙션 또는 활동의 안전한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항상 안전 가리개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없는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을 폐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고객이 미리 또는 예약으로만 방문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트랙션, 게임 및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충분한 직원을 배정해야 하며, 수용 인원, 개인 보호 장비 및 적절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모든 지침을 항상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면 접촉 및 모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 근무 시간을 조정합니다.
 - 교대근무를 설계(예: A/B팀, 도착/출발 시간 교차)합니다.
 - 고객이 어트랙션, 게임 및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신청" 또는 사전 등록 정책을 고려합니다.
 -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가능한 경우 활동을 나눕니다.
 - 전화, 복사기, 인쇄기, 금전 등록기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직원 장비의 안전한 공유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개발하거나
 - 사용 사이에 적절한 청소 및 소독 및/또는 적절한 손 위생을 시행하지 않은 모든 공유 장비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청소 및 소독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실내 오락시설 또는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 폐쇄 전에 퇴장 중 혼잡과 모임을 줄이기 위해 여러 시간 또는 단계별로 어트랙션, 게임 및 활동을 폐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상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교환하기 전에 선물 카운터 및 교환 센터에서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상품 또는 선물을 교환하기 전에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 가능한 한 책임 당사자는 종이 교환 티켓 대신 디지털 토큰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가방 보안 검사나 기타 보안 검사가 필요한 시설 또는 센터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직원이 개인 물품에 자주 접촉할 필요가 없도록 고객에게 불투명한 백이 아닌 투명한 백에 물품을 가져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고객에 시설이나 센터에 대형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D. 이동 및 거래

- 책임 당사자는 최대 수용 인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실내 오락 또는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 내부로의, 그리고 내부에서의 고객 및 직원의 통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사람들의 이동 흐름을 관찰하고 단체가 적절한 사회적 거리구리 및 모임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직원을 현장에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의 밀집이나 배회를 반드시 금지하고, 이러한 밀집과 배회를 막기 위해 충분한 직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대기줄이나 밀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구 및/또는 개별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의 고객 도착 시간에 시차를 둘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고객을 위해 시차를 둔 입장 시간 슬롯을 고려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좁은 통로, 복도, 또는 공간에서 화살표가 표시된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양방향 이동 흐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모든 혼잡하게 사용되는 공간 및 일반적으로 줄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집합할 수 있는 공간(예: 공용 구역, 화장실, 출입구, 티켓 스테이션, 출/퇴근 스테이션, 건강 검진 스테이션 등)에 6피트 공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거리 마커를 게시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일방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마커 또는 장벽을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혼잡한 구역(예: 로비의 공용 좌석 구역, 화장실)에 6피트 거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별도의 출구와 입구를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시각적 표지나 마커의 사용 및/또는 줄 관리 장치(예: 스탠치온, 줄 거리 마커, 화살표 등) 등을 포함하여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객이 외부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 대기 구역을 배치하여(예: 줄, 주차장 등) 다른 고객과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대화하고 구역 내의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현장 접촉(예: 시설을 떠나는 사람의 출구 및 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의 입구를 지정) 및 이동(예: 직원이 가능한 범위에서 자주 워크스테이션 근처에 있도록 함)을 제한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화재 안전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제 사항을 준수하면서 (1) 시설로의 이동량을 관리 및 점유/수용 인원 제한을 관리하고 (2) 건강 선별을 촉진하기 위해 하기의 내용처럼 입구의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용 가능한 경우 직원 및 고객이 선별을 위해 시설 내부 또는 외부에서 대기할 때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출납원 또는 체크인 직원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상기 내용과 같이 고객과 직원 간의 적절한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티켓 또는 체크인 절차는 가능한 한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픽업 및 배송 구역을 지정하여 가능한 한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 배송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자가 차량의 운전석에 머물러 있는 무접촉 배송 시스템을 구현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배송 절차 동안 예상 활동에 허용 가능한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최소한 안면 가리개 등)를 무료로 배송 관련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품 또는 장비를 나르기(예: 배달 운전수로부터) 전후 직원이 손을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예: 물건을 신기 시작 전 손 위생을 수행하고 모든 짐을 실은 후 다시 소독하기).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고객이 사용하도록 비접촉식 체크인, 선불 결제 옵션 또는 사전 예약 옵션을 시행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 토큰, 고객 카드 또는 티켓, 모바일 장치 취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용 및 실행이 가능한 경우 고객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티켓을 사전에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II. 장소

A. 공기 처리 및 건물 시스템

- 책임 당사자는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을 갖춘 시설의 경우, 중앙 냉난방 공조(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시스템 여과가 가능한 경우 현재 설치한 필터 랙 및 공기 처리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는, 최소한 최소효율성보고수치(Minimum Efficiency Reporting Value, MERV) 13등급 또는 업계 동일 수준 이상(예: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high efficiency particulate absorber, HEPA))의 최고 수준의 여과를 만족하도록 하고, 공인 냉난방 공조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미국 냉난방 공조 엔지니어 협회(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가 기록하고 인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미국 냉난방 공조 엔지니어 협회 권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추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완화 절차 채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특히 공기 처리 시스템이 15년 이상 된 건물).
 - 중앙 시스템의 필수 레트로 커미셔닝 및 필요에 따라 검사, 균형 잡기 및 수리 실시
 - 가능한 범위에서 환기율 및 실외 공기를 이용한 환기 증가
 - 더 긴 시간 동안 시스템 가동을 유지(특히 점유 전후에 매일 몇 시간 동안)
 - 합당한 경우 수요 통제 환기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유지
 - 가능한 경우 상대 습도를 40~60%로 유지
 - 가능한 범위에서 공기 재순환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실외 공기 댐퍼 개방
 - 우회 제한을 위해 필터의 에지 실링

- 정기적으로 시스템과 필터를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UVGI**) 설치 및/또는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를 사용
-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이 위에서 언급한 최소 여과 수준(즉, 최소효율성보고수치 **13등급 이상**)을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인 냉난방 공조 기술자, 전문가 또는 회사, 미국 냉난방 공조 엔지니어 협회 인증 전문가, 공인 레트로 커미셔닝 전문가 또는 뉴욕 공인 전문 건물 엔지니어로 하여금 현재 설치한 필터 랙이 상기 최소 수준의 여과(즉, 최소효율성보고수치 **13등급 이상**)와 호환될 수 없고/없거나 공기 처리 시스템이 높은 수준의 여과(즉, 최소효율성보고수치 **13등급 이상**) 시스템을 설치하면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이전 제공할 수 있었던 최소 수준의 냉난방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록 및 인증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책임 당사자는 추가 환기 및 공기 여과 완화 절차를 포함하여 더 낮은 여과 등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 또는 지역 보건부 공무원이 검토하기 위해 그러한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 또한 최소효율성보고수치 **13등급 이상**의 정화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이 있는 시설의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미국 냉난방 공조 엔지니어 협회 권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추가 환기 및/또는 공기 정화 완화 절차를 반드시 채택해야 합니다.
 - 중앙 시스템의 필수 레트로 커미셔닝 및 필요에 따라 검사, 균형 잡기 및 수리 실시
 - 가능한 범위에서 환기율 및 실외 공기를 이용한 환기 증가
 - 더 긴 시간 동안 시스템 가동을 유지(특히 점유 전후에 매일 몇 시간 동안)
 - 합당한 경우 수요 통제 환기 시스템의 운영을 중단하고 신선한 공기 공급을 증가시키는 시스템을 유지
 - 가능한 경우 상대 습도를 **40~60%**로 유지
 - 가능한 범위에서 공기 재순환을 줄이거나 금지하는 실외 공기 댐퍼 개방
 - 우회 제한을 위해 필터의 예지 실링
 - 정기적으로 시스템과 필터를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 설치 및/또는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를 사용
 - 중앙 공기 처리 시스템이 없는 시설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미국 냉난방 공조 엔지니어 협회 권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추가 환기 및 공기 정화 완화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모든 공간 환기 시스템(예: 창문 시설, 벽면 부품)을 점검하여 적절히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필터가 적절히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잔여 수명이 남아있는지 확인.
- 더 긴 시간 동안 모든 공간의 환기 시스템을 가동 유지(특히 점유 전후에 매일 몇 시간 동안)
- 신선한 공기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 환기 시스템을 설정하고 송풍기 팬을 저속으로 설정하며, 가능한 한 점유 인원의 방향을 향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상대 습도를 40~60%로 유지
- 점유 인원의 안전과 편안함을 허용하는 범위까지 창문 개방
- 해당하는 경우, 모든 천장 팬을 점유 인원으로부터 위쪽으로 공기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도록 설정합니다.
- 가능한 경우 실내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창문의 팬을 우선합니다.
- 적절한 배기를 제공하지 않고 공기만 순환시키거나 실내로 공기를 불어 넣는 팬의 사용을 피하기
- 공기 중 바이러스 입자의 비활성화를 위해 적합하게 설계 및 배치된 자외선 살균기 설치 및/또는
- 적절한 성능 수준에서 가장 높은 공기 교환 속도를 제공하고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장치를 고려한 휴대용 공기청정기(예: 전기 고효율 입자 여과 장치)를 사용
- 완전 폐쇄되었던 건물 근무자가 건물로 복귀하기 전, 책임 당사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복귀 점검 및 과제, 평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기계 시스템, 수도 시스템,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장비를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책임 당사자는 기계(예: 밸브 및 스위치)가 신중히 관찰하여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장기간 운영을 하지 않은 후,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려면 특정 시스템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책임 당사자는 운영 중단 기간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각 항목에 대한 필요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공기 시스템의 메이크업/외부 설계에 따라 최소 24시간 동안 신선한 공기를 활용해 건물을 환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공기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예: 건물 환기 후).
 - 책임 당사자는 냉각탑의 유지 보수 및 모니터링이 주정부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밀폐수 시스템 및/또는 수질이 화학 및 미생물적으로 규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보관하는 모든 장치에서 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건물 물 관리 계획에 따라 냉수 및 온수 시스템을 배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건물 수도 시스템을 재출한 후 필요에 따라 정수 필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 완전히 폐쇄된 건물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건물을 재개장하기 전에 모든 기계 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 상태가 회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B. 보호 장비

- 책임 당사자는 허용되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 한 경우에만 직원과 고객이 실내 오락시설 및 가족 엔터테인먼트 센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단, 나이가 만 2세 이상이며 안면 가리개를 의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행정명령 202.34호에 따라,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지정된 구역에 앉은 상태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거나, 고객이 위에 언급된 별도의 보건부 지침이 적용되는 수중 환경에 있지 않는 한, 고객이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안면 가리개가 없는 고객 간의 상호 작용을 제한하도록 지정된 식사 공간이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특정 직장 활동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조달, 제작, 또는 기타 방식으로 획득하고 직장에서 직원에게 비용 없이 그러한 가리개를 제공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 또는 고객이 교체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면 가리개, 마스크, 기타 필수 개인 보호 장비 비축량을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에는 천(예: 수제 봉제, 임시 가리개, 두건),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사용 후 세척 또는 교체해야 하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천 얼굴 가리개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 유형에 관한 추가 정보와 사용 및 세척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 천 안면 가리개 또는 일회용 마스크는 더 높은 수준의 안면 또는 호흡기 보호를 요구하는 직장 활동에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N95 마스크는 천 소재 또는 수제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은 특정 활동에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안전 장비에 대한 직업 안전 및 보건관리국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가 젖거나 더러워지면 정기적으로 세척하거나 교체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자신의 허용 가능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직원이 자신의 안면 가리개를 스스로 공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 따르면, 직원이 개인 소유의 추가 보호 가리개(예: 수술용 마스크,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직원의 업무 특성상 더 보호가 잘 되는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적용 가능한 모든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어떻게 끼고, 벗고, 세척(해당하는 경우), 폐기하는지 교육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안면 가리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과 고객이 상호 작용하는 공통 지점(예: 체크인, 출납원, 상품 교환 카운터)과 개인 간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어트랙션, 게임 및 활동 사이에 물리적 장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시설에서 그러한 어트랙션 게임 및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장벽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물리적 장벽(예: 플렉시 유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을 사용하는 경우 직업 안전 및 보건관리국 지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고객과 정기적으로 밀접히 접촉하는 직원(예: 체크인)에게 안면 보호대, 장갑 및/또는 눈 보호대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장비 등 물건 공유와 금전 등록기 등 공유하는 표면의 접촉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는 공유 물건이나 자주 만지는 표면을 접촉할 때 직원이 장갑(작업용 또는 의료용)을 착용하거나, 접촉 후 손에 손을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C. 위생, 청소 및 소독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공공 및 민간 시설 청소 소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Cleaning and Disinfection of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for COVID-19) 및 "확산 방지"(STOP THE SPREAD) 포스터를 포함하여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및 보건부가 권고하는 위생 및 소독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날짜, 시간 및 청소 및 소독 범위를 포함하는 일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현장에 손 위생대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손 씻기: 비누, 흐르는 온수 및 일회용 종이 타월.
 - 손 소독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에서 최소 60% 알코올을 함유한 알코올 성분 손 소독제.
 - 책임 당사자는 공용 구역(예: 입구, 출구, 기념품점, 상품 카운터, 게임, 어트랙션) 전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자동 손 소독제 분사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손 소독 장소 근처에, 눈에 띄게 더러운 손은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하며 손 소독제는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더러운 품목을 폐기할 수 있도록 시설 주변에 쓰레기통을 배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시설을 최소 매일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많은 개인이 사용하는 고위험 지역 및 자주 만진 표면은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청소 및 소독은 엄격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운영 중에는 자주 시행하고 필요할 때마다 시행해야 합니다. 시설 청소 및 소독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보건부의 "코로나19 대비 공공 및 민간 시설의 청소 및 소독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는 동일한 단체/가족/가구가 아닌 고객 및/또는 직원 간에 공유되는 장비나 물체(예: 어트랙션, 게임기)를 매 사용 사이에, 또는 최소한 운영 중 매 2시간마다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단, 고객이 게임을 하거나 어트랙션 또는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장비를 대여하거나 빌릴 경우 책임 당사자는 직원이 매번 사용 후 반납된 모든 장비(예: 대여 신발, 하네스)를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 특히, 플레이하는 동안 고객 간에 공유하는 액세서리가 포함되거나 필요한 어트랙션(예: 3D 안경, VR 헤드셋, 레이저 태그, 헬멧, 보드 게임, 카드)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고객 사용 사이에 각 품목을 적절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되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예: 난간, 문, 게임, 어트랙션, 터치스크린, 버튼, 상품 교환 카운터)을 위해 적절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이 이러한 표면 사용 후 또는 운영 중 빈번한 간격으로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이러한 용품을 사용하고 이후 손 위생을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어트랙션, 게임, 활동 및 접촉이 잦은 표면의 청소 및 소독을 위한 충분한 직원을 확보하고, 이들을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고객이 사용하기 전 어트랙션, 게임, 활동을 청소 및 소독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성인이나 동반한 미성년자 고객이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을 플레이하거나 참여를 시작하기 전에 성인 고객이 사용할 일회용 물티슈, 손 살균제와 같은 청소 및 소독 물품을 어트랙션, 게임 또는 활동 옆에 남겨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고객은 섭취 또는 오용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 및 소독 용품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적어도 2시간마다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사용 빈도에 따라 더 자주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화장실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 사용 중 표시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공유 워크스테이션(예: 체크인 또는 상품 카운터)이 서로 다른 직원이 사용할 때 사이에 청소 및 소독되도록 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등록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장비와 도구, 어트랙션, 게임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청에서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고 인증한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등록 제품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 상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거나 청소 및 소독하는 행위로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물품, 장비, 어트랙션 또는 게임을 손상시키는 경우, 책임 당사자는 해당 어트랙션 또는 게임을 고객에게 폐쇄하고, 직원 사용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위생 스테이션을 실시하고, 직원에게 일회용 장갑을 제공하고, 해당 물질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직원 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개인 간 또는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노출 구역을 청소 및 소독해야 하며, 청소 및 소독 시 최소한 모든 통행량이 많은 구역 및 접촉이 잦은 표면(예: 좌석, 어트랙션, 게임, 공유 또는 대여 장비, 난간, 핸들, 손잡이)을 포함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시설 청소 및 소독"(Cleaning and Disinfecting Your Facility)에 대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사용한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 책임 당사자가 영향을 받는 구역을 폐쇄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영업을 중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해당 구역의 공기 순환을 높이기 위해 외부 문과 창을 여십시오.
 - **24시간**이 지난 후 청소 및 소독을 하십시오. **24시간**이 가능하지 않으면 최대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장비 등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가 사용한 모든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 구역을 적절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면 사용을 위해 열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과 밀접히 또는 근접하게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청소 및 소독 후 즉시 작업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선별 검사는 가능한 한 장소에 입장하기 전에 원격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예: 이메일, 전화, 전자 조사, 티켓 구매 시, 표지판을 통해).
- 선별 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개인이 서로 밀접하거나 근접한 접촉을 하지 않도록 선별 검사를 조정해야 합니다.
- 선별 검사의 일환으로 책임 당사자는 비접촉 온도계 또는 열 감지 카메라를 사용하여 모든 고객에 대해 체온 검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지난 10일 이내 발열 증상이 있는 고객들과 밀접한 접촉을 했을 수 있는 고객 구성원(예: 가족 구성원, 같은 거주지를 공유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100.4° F 이상의 체온이 측정된 모든 고객에 대한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첫 번째 체온 검사에서 100.4° F 이상의 체온이 측정된 고객이 임시로 검사선을 벗어나서 체온이 정상화될 때까지 몇 분 정도 기다린 다음 두 번째 체온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사가 첫 번째 검사의 결과를 확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검사가 100.4° F 이상의 체온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고객은 행사/경기 대회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체온 측정은 반드시 온도 검사는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U.S. Equal Opportunity Employment Commission) 또는 보건부 지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개인이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개인 건강 자료(예: 개인의 특정 체온 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수 없지만, 개인이 선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기록 및 선별 검사 결과(예: 합격/불합격, 허가/허가되지 않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 선별 검사에서는 개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판별하는 설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증상: 현재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하고 있거나 최근에(지난 48시간 이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코로나19 증상으로 발열이나 오한, 기침, 숨참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의 새로운 상실, 인후염, 코 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 중 일부는 알레르기나 편두통과 같은 의사가 진단한 기존의 의학적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상이 새롭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만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연락처: 진단 검사에 의해 확진되거나 증상에 근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지난 10일 동안 밀접한 접촉(또는 보건 당국에서 판단한 근접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부는 밀접한 접촉이란 증상이 나타나기 2일 전부터 또는 무증상인 경우 검사 2일 전부터 24시간 이내에 10분 이상 개인의 6피트 이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함을 발표했습니다. (밀접한 접촉은 적절하고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건강 관리 환경에서 일하는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예외 사항은 (1)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지난 90일 이내 완전히 받았거나(백신 시리즈 완료 후 14일로 정의됨) (2) 지난 3개월 이내 실험실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사례에서 완전히 회복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밀접한 접촉 후 격리 대신에, 해당 개인은 노출 후 14일 동안 코로나19 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지난 10일 동안 진단 검사 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또는
 - 최근 여행: 코로나19 확산이 되지 않은 주, 미국 영토 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수준 2 이상 여행 경보 국가로부터 지난 10일 내 뉴욕주를 여행했으며 뉴욕주의 여행 경보를 준수하지 못했습니까?

- 2021년 4월 1일부터 뉴욕주의 여행 정보에 따르면 미국의 다른 주 또는 영토로부터 뉴욕을 방문한 국내 여행자가 더 이상 격리 조치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요건은 유효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와 같이 앞에서 언급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변경되는 경우와 때에 즉시 알리도록 직원, 고객(시설 내에 있는 도중)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선별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선별 모범 관행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선별 검사에 실패했을 경우 고객에게 장소에 입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이는 증상이나 양성 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로 의심되거나 확진된 개인과 밀접한 접촉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선별 검사 설문지를 작성하고 통과한 개인을 확인합니다.
 - 시설 구성이 허용한다면, 코로나19 의심이나 확진 사례의 경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구 또는 근처에서 개인을 선별합니다.
 - 개인이 선별 검사 및/또는 시설 입장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체온 점검을 포함한 선별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직원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진입하는 개인에 대한 노출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별 검사 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운영자가 식별한 질병 통제 예방 센터, 보건부 및 직업 안전 및 보건국 절차에 정통한 개인에 의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별 담당자는 최소한 허용 가능한 안전 가리개를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장비에는 장갑, 가운, 고글 및/또는 안면 보호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선별 설문지를 통과하지 못한 모든 고객과, 해당 고객과 지난 10일 내에 밀접한 접촉을 했을 수 있는 고객 단체의 모든 일원(최근의 증상 또는 최근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양성 진단을 보고한 경우)의 시설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예: 가족, 동일한 거주지를 공유하는 개인).
 - 최근 증상 또는 최근의 양성 진단 검사 결과로 인해 선별 설문지를 통과하지 못한 고객은 의료 기관에 연락하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선별 설문지에 통과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시설 입장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원은 평가 및 해당하는 경우 진단 검사를 위해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라는 지침과 함께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직원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검사 자원에 대한 정보를 원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및 지역 보건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가 확인된 후 또는 직원이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한 후 직원이 작업장에 돌아가려는 경우 절차 및 정책에 대해 보건부의 "코로나19 감염 또는 노출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공무원 및 민간 직원 임시 지침"(Interim Guidance for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Returning to Work Following COVID-19 Infection or Exposure)을 참조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활동, 위치, 근무 또는 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직원 설문지를 받고 검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중앙 연락처 또는 연락처들을 지정해야 하며, 이러한 연락처 또는 연락처들은 직원이 후에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설문지에 통보된 대로 알릴 당사자로 식별됩니다. 시설에 대해 식별된 연락 지점은 의심되거나 확진 사례의 개인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현장 안전 감시자와 협의하여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통지, 통신, 접촉 추적, 청소 및 소독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모든 개인을 위해 현장 안전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 등을 담당하는 현장 안전 모니터 요원을 지정합니다.
 - 현재 또는 최근에 시설을 방문한 개인에 대한 진단 검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사례에 대해 통지할 경우 현장 안전 감시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모든 확진 판정 사례를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격리가 필요할 수 있는 밀접 또는 근접 접촉자를 식별하기 위한 연락처 추적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 확진 사례가 보고되고, 접촉 추적이 수행되며, 밀접 접촉이 통보되며, 노출된 구역의 추가 청소 및 소독이 수행된다는 사실을 시설의 확진 사례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알려진 개인에게 알립니다.
 - 위의 절차에 따라 노출된 구역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위해 적절한 직원을 파견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또는 비접촉식 수단을 통해 수행된 배달 및 책임 당사자가 별도로 참석을 관리할 고객을 제외한 시설에서 다른 개인과 밀접한 또는 근접 접촉을 한 직원, 계약자, 벤더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일지에는 각 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코로나19 양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모든 접촉을 식별, 추적 및 통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록은 28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주정부 또는 지역 보건부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추적 및 조사

- 책임 당사자는 현재 또는 최근에 시설이 있었던 직원, 고객, 해당하는 경우 하청계약자 및 벤더를 포함한 모든 개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임을 알리면 즉시 주 및 지역 보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시설에서 상호작용했던 개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책임 당사자는 이러한 개인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거나 진단 검사를 위해 샘플을 수집하기 전(둘 중 더 이른 시점) 48시간 이내에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또는 근시에 같은 구역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는 시설에서 개인을 식별함으로써 주 및 지역 보건부 접촉 추적 노력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적 작업에는 직원 기록/일정, 선별 기록, 참석자 등록 및/또는 공용 영역의 동영상(예: 입구/출구, 로비)과 같은 시설 정보 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는 연방 및 주법, 규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시설 내에 있다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직원의 경우, 책임 당사자는 주변 사람 또는 밀접 접촉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람에게 즉시 해당 유증상자의 시설 내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만약 유증상자가 진단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주 및 지역 보건부는 해당하는 경우 법적 권한에 따라 자택 격리 및 검역을 포함하여 감염자 또는 노출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동 제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또는 근접 접촉을 했다는 경고를 받고 추적 조사 또는 기타 메커니즘을 통해 경고를 받은 직원은 경고를 받은 시점에서 해당 고용주에게 자가 보고해야 하며 위에 언급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책임 당사자는 참석한 각 고객(또는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단체/가구/가족의 성인)에게 잠재적인 접촉 추적 노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의 연락처 정보를 시설 도착 전이나 직후에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연락처 정보 수집 절차는 책임 당사자가 위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정한 수단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은 티켓 구매 시점, 디지털 신청서 또는 서면 양식을 통해, 전자 카드 또는 바코드 리더기 또는 티켓 관리 시스템을 통한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책임 당사자는 상술한 등록 데이터 기록을 최소 28일 동안 보관하고 주정부 및 지역 보건부가 요청할 경우,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IV. 고용주 계획

책임 당사자는 작성된 안전 계획을 직원을 위해 현장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사업체 소유자 및 운영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체 재개 안전 계획 템플릿을 제공했습니다.

추가 안전 정보, 지침 및 자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coronavirus.health.ny.gov/>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직업 안전 및 보건 관리국 코로나19 웹사이트
<https://www.osha.gov/SLTC/covid-19/>

[아래 링크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할 의무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십시오.](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

<https://forms.ny.gov/s3/ny-forward-affirmation>